

포항공과대학교 상조회칙 신규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
(신설)	<u>별표 1, 배우자조부모상 50만원 지급</u> <u>별표 1. 조문용품은 지역별 배송시간을 고려하여 배송이 5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지역은 현금과 용품중 선택할 수 있다.</u>	
제 5 조(자격) ①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그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퇴직일 또는 탈퇴일까지로 한다. 1. 포항공과대학교의 전임교원(방문교수, 대우교수, 박사연구원, 조교 제외) 2. 대학 및 법인 정규직원(축탁직 포함) 3. 상근계약직원 4. 정규직 전환 대상 계약직원 5. 가속기연구소 전임 석박사연구원 ② 전임조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에서 따로 결정한다. ③ 위의 자격자는 임용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(별표 2)의 교직원상조회 가입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제 5 조(자격) ①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그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퇴직일 또는 탈퇴일까지로 한다. 1.포항공과대학교의 전임교원(방문교수, 대우교수, 박사연구원, 조교 제외) 2.대학 및 법인 정규직원(축탁직 포함) 3.상근계약직원 4.(삭제) 5.가속기연구소 전임직원 ② 삭제(2020.4.1) ③ 위의 자격자는 임용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(별표 2)의 교직원상조회 가입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
제 13 조(지급금액) 지원금의 종류와 지급금액은 (별표 1)과 같다. 단 동일건은 1 회에 한하여 지급한다.	제 13 조(지급금액) 지원금의 종류와 지급금액은 (별표 1)과 같다. <u>후단 삭제(2020.4.1)</u>	
제 14조(신청 및 지급) ① 지원금 수급대상 회원은 POVIS시스템(Human Resource-경조금신청)으로 신청하며, 이 경우 회장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	제 14 조(신청 및 지급) ① 지원금 수급대상 회원은 POVIS 시스템 (Human Resource-경조금신청)으로 신청하며, 이 경우 회장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 ② 지원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	

제 20 조(예 산) 본회 예산서는 각 회계연도 개시전 1 개월 이내의 기간에
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.

제 20 조(예 산) 본회 예산서는 각 회계연도 개시전 1 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
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 다만, 실무목적상 직전연도 결
산서와 함께 보고.승인할 수 있다.